31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운동 인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 종 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운동 인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 종 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1 들어가며

최근 제주 4·3 70주년 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1] '제주 4·3, 진실과 정의_지속가능한 정의를 위하여'라는 대주제였다. 그 취지는 "제주4·3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마련해 앞으로 4·3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외국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과 국가 혹은 민간차원의 과거청산 사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인도네시아, 그리스, 캄보디아,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의 학살과 진상운동 등이 소개되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6년에 '2016 세계기록총회(2016 ICA 서울총회)'[2] 를 개최한 바 있다. '기록, 조화와 우애'(Archives, Harmony and Friendship)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거사 청산과 기록 보존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대회에 참석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인상 깊었던 발표 중 하나는 프랑스의 한 항구도시에 있었던 17~8세기 아프리카 원주민 강제 유입 과정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배보상 활동을 위한 기록 추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하나는 르완다 대학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록 보존을 위해 재판 증인으로 나온 수천 여 명의 여성들에 대한 증언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대규모 기록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의 두 행사에 참가했던 필자로서는 21세기 역사정리와 과거사 청산 방향이 전 세계적이면서 특정 지역의 사례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칠 수 없었다.

제주 4·3을 비롯한 민간인학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정부수립이후의 고

1) 이 행사는 2018년 10월 4일에서 6일까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 학술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가 주관하여 제주 칼호텔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였다.

2)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1948년 유네스코 주최 기록전문가회의 결의로 창립된 기록관리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현재 190여 개국, 1,500여 회원(국가, 협회, 기관, 개인)이 활동 중이며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어 기록관리 올림픽이라고 불린다.

문 인권 문제 등 우리 사회에도 청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어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상당정도 진실규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정권 10년 동안에는 활동이 더 필요한 위원회가 법률에서 규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활동이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과거사 청산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민주화운동 관련 인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02 과거사 위원회 소장 기록의 성격

과거사 위원회는 주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표 1〉에서 보듯이 18개 위원회 중 13개 위원회가 참여정부때 설립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부분 법률에 활동기한을 명시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 등이 없으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한시기구의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이 위원회가 참여정부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이 종료되거나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표 1〉 참여정부 시기까지의 위원회 현황(2006년 기준)

	위원회명	발족일	근거법률
1	5.18(광주) 민주화운동보상지원위원회	1998.0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관한법률('90.8.6)
2	거창사건등관련 자명예회복위원회	1996.04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96.1.5)
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	2000.08.2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00.1.12)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2000.08.0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등에관한법률('00.1.12)
5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위원회	2004.08.25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04.3.5)
6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4.11.1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04.3.5)
7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2005.05.3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 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04.3.22)

8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2004.07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 보상에관한법률('04.1.29)
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회	2005.02.1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04.1.29)
10	특수작전공로자 인정심의위원회	2004.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군복무인정및보상법 ('04.3.22)
1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01.01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05.7.31)
12	동학농민혁명참여 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4.07.1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04.3.5)
13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5.12.05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05.5.)
14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4.11.18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아님 (부처소속기구)
15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5.05.27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아님 (부처소속기구)
16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 발전위원회	2005.05.27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아님 (부처소속기구)
17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2000.10.17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01.1.15)
18	친일반민족행위 자재산조사위원회	2006.08.1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05.12)

* 출처: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256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해당 사안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금 지급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들은 공신력 관점이나 활동영역 면에서 상당한 성과와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과거사 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그 성격으로 나눠보면 크게 '일반 행정기록'과 '조사기록' 그리고 '수집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행정기록'은 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법규나 지침 또는 급여나 예산운영기록, 근무상황 등과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생산·접수되는 기록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따라서 성격상 다른 항구적 기관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관리상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기록은 위원회의 존속이 종료된 후 조사기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폐기되는 기록이기도 하다.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자료이다. 이들 대부분은 조사보고서로서 위원회가 생긴 목적을 문서화하는 것이며, 그동안 묻혀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는 일로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 또한 위원회의 생산기록물 중 일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는 그 성격이 차별화되는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소중한 조사기록은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남겨야 할 국가 유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물리적 재산인 수집 자료는, 조사기록을 만들어내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과거의 기록이다. '수집자료'는 위원회의 주 업무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국내 · 외 출장 등을 통해서 수집하고 또는 기증받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문서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진, 훈장, 상장, 편지 등의 시청각류와 행정박물류도 있다. 이러한 수집 자료는 앞으로 다른 학술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기록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수집자료 역시 조사기록 못지않은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기록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교육·연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희생자들의 인명 DB의 같은 경우 유가족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작업이다.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때 시도했던 '동행자 찾기' 콘텐츠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시, 강제동원희생자 검색서비스가 구축된다면, 검색분류시스템은 동원별로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로 나누고 연도별로 1930년, 40년, 40년 이후 해방 까지, 장소별로는 국내, 국외로 분류하며, 희생자의 동원유형, 성별, 현재 사는 위치, 사망한 희생자는 사망일시와 살았던 곳이 포함되며, 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밝혀 희생자의 유족들이 희생자의 현 상황과 지원 여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진상규명의 여러 명부를 연계하여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전사하거나 병사하였을 경우, 사유를 자세히 밝혀 줌으로써 유가족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이나마 덜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4]

민주화운동 인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이러한 의미를 담아 데이터 구조와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유용한 콘텐츠로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259~260

4) 우지원·이영학 편. 201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89.

03 『민주화운동 백서』의 신청 현황

2000년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출범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6년 지난 16년의 기록으로 『민주화운동 백서』(이하 '백서')[5]를 발간하였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백서는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를 담은 최초의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백서는 위원회에 명예회복과 보상을 신청한 13,369건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9,713건의 인정사실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 인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기초 자료들이다.

백서에 따르면 1차에서 5차에 걸쳐 신청, 접수한 13,369건 중 보상을 신청한 사안은 1,761건(14%)이었고,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안은 11,608건(86%)이었다. 보상신청 사안 1,761건 중 사망 건은 352건이고, 상이 건은 1,409건이었다. 명예회복신청 사안 11,608건 중 유죄판결에 대한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안은 7,826건이고, 해직에 대한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안은 3,184건이며, 학사징계에 대한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안은 598건이었다.

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편. 2016. 『민주화운동백서 』 전5권.

〈표 2〉 1차~5차 접수현황

차수별	계	보상신청 건수			명예회복 건수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 판결	해직	학사 징계
계	13,369	1,761	352	1,409	11,608	7,826	3,184	598
1 차	8,544	952	194	758	7,592	4,848	2,465	279
2 차	2,387	407	94	313	1,980	1,429	442	109
3 차	733	135	15	120	598	454	75	69
4 차	438	116	26	90	322	260	36	26
5 차	1,267	151	23	128	1,119	835	166	115

출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편. 2016. 『민주화운동백서 』(위원회편). 111.

명예회복과 보상을 신청한 남녀 비율로는 남자가 82%, 여자는 18%였다. 항거 당시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반(20~24세) 43.5%, 20대 후반(25~29세) 19.9%로 20대가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학생 특히 대학생이 다수라고 백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30~40재 연령대도 26.8%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학생운동 경험을 지닌 사람들로서 청년 조직 활동, 노동자, 언론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고 연령층에는 1960~1970년대 활동했던 재야 원로 인사와 1980년대 민추협 활동 정치인들이 해당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약 45%, 광주 약 10%, 인천이 약 5%이며, 시기별로 보면 유신체제 시기(1972~1979년, 13.9%), 전두환 정부 시기(1980~1987년, 42.2%),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2년, 31.8%)에 발생한 사건들이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분야별로는 '반독재운동'의 규모가 가장 크며 '학원민주화운동'의 비중도 큰 편이다. 그리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생존권을 위한 투쟁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밖에도 언론출판운동, 문화예술운동, "반외세자주"를 주장한 운동, 통일운동, 사회권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청사건이 있었다.[6]

위원회에 신청한 1만 3천여 건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향후 민주화운동 사건·단체·인명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긴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이상은 위의 백서(위원회 편) 제5장 제2절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형별 분포"를 요약함. 기타 피해유형별 내용, 시대별 심의현황 등이 백서(위원회 편)에 있지만, 이 글이 위원회의 대략적인 분포를 이해하고 하는데 있어서 생략함.

04 나오며: 민주화운동 인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는 2017년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이영제 박사, 이하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7] 보고서는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소극적 기념·계승에서 적극적 기념·계승으로', '다층적·다차원적 기념·계승: 기념·계승 체계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극적 기념사업에서 적극적, 국민 참여적 기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관련 조사 및 연구에 기반을 둔 자료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념·계승에 대한 국가적 준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희생자·피해자, 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여자, 일반시민, 미래세대, 국가(사회)를 한축으로 하고 다른 축으로는 배상·보상, 명예회복(부여), 치료(치유), 인증, 기념, 교육, 교류 등을 다른 축으로 하는 다층·다차원적 기념·계승사업의 망 구축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민주주의를 담아내야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하였다.[8]

민주화운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은 『민주화운동 백서』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 편찬한 다양한 연구서, 지역과 개인의 연구서, 사료관 소장 기록물 등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사 위원회에서의 조사와 수집기록들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패러다임 방향을 접목해서 시작부터 설계를 잘 해야 한다. 여기에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의 편찬과정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이다. 왜냐하면 『친일인명사전』이 객관성과 엄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인물정보통합시스템이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인물 정보의 집적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공문서 · 신문 · 잡지 등 문헌자료를 1차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방 후의 신문기사·회고

7) http://ikd.kdemo.or.kr/board03/view.asp?key=50

8) 이영제. 2017.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11~12.

록 · 증언 등은 방증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 · 직원록 등 관찬사료 23종 200여 권, 매일신보 · 경성일보 · 만선일보 등 신문자료 40여 종, 삼천리 · 조광 등 친일 잡지 · 기관지 80여 종, 조선신사록 · 조선인사록 등 명감류(名鑑類) 140여 종, 각 도 · 시 · 군지 등 지지류(志誌類) 160여 종, 각종 연감 · 사전류 60여 종, 공훈록 40여 종, 일기 · 회고록 · 평전류 1,500여 종 등 총 3,000여 종의 일제강점기 원사료와 데이터베이스 450여 종 등 방대한 기초자료가 활용되었다.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희귀 고문서와 사진자료가 추가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를 분석 · 재정리하여 300만여 건에 달하는 인물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만5천여 건에 이르는 친일혐의자를 모집단으로 추출하였다. 실로 엄청난 공력이 들어갔는데 이 같은 투자가 있었기에 사전의 생명인 정확성과 질적 수준을 모두 갖출 수 있었다.

자료의 정보화는 사전편찬을 용이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연구원들이 열악한 여건 아래 '공장'을 돌려 체계적으로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사전편찬이 불가능하였다. 외부적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사료 공개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9]

민주화운동 인명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명 DB는 신청접수하지 않은 인물들까지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인물선정위원회 등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향후 관련법의 개정이나 위원회가 부활했을 경우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민주화운동 인명 DB는 역사교육 콘텐츠로 거듭나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웹콘텐츠인 '한국사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LOD(Linked Open Data) 기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인물, 사건, 유물유적, 조직 등 주요 역사용어 데이터를 링크해주는 입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눈여겨 볼 만하다.

결국에는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단체, 인명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은 민주화운동 역사의 집대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과거사 위원회 활동 결과를 사전화하여 포함하면 한국 근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건 사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반민족행위자 사전으로 이미 편찬되었다. 일

9) 이상 친일인명사전 관련 내용은 조세열. "『친일인명사전』편찬 경험과 제언(2018 발표 예정)". 과 필자와의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집대성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 인명사전』과 반민주인명사전이 덧붙여지면 그야 말로 한국근현대인명사전이 완성될 것이다.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임시정부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 공포된 해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100여 년의 기간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감히 주장한다. 앞으로 100년의 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해 과거사 청산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 민주화운동 인명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편. 2016.『민주화운동백서 』(위원회편).

우지원·이영학 편. 201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이영제. 2017.『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조세열. “『친일인명사전』편찬 경험과 제언(2018 발표 예정)”.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운동 인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8년 11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9 772508 324001 11
ISSN 2508-3244